

안산시 계약심의위원회 구성·운영 및 주민참여 감독대상 공사 범위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안 번호	2961
----------	------

제출년월일 : 2017.02.30
제출자 : 안산시장

제안이유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 개정사항 반영 및 법제처의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이해하기 쉽게 법령 개정

주요내용

- 가. 상위 법령 개정 사항을 그대로 반영할 수 있도록 법시행령 제106조제2항에 따라 계약심의위원회 위원을 위촉하는 것으로 정비하고 위원장을 민간위원에서 호선하는 것으로 함.(안 제2조)
- 나. 계약심의위원회 기능을 법 제32조제1항 및 법시행령 제108조 제1항에 따르는 것으로 간략하게 정비함(안 제4조)
- 다. 상위 법령에 규정되어 있지 않은 자문대상 삭제(안 제5조, 제6조 제8조, 제9조, 제10조)
- 라. 계약심의위원회 위원의 해촉을 법시행령 제106조의2에 따라 하도록 정비(안 제12조)
- 마. 주민참여감독 대상공사 및 상한 금액을 법시행령 제60조제2항에 해당하는 것으로 정비(안 제13조)

개정조례안 : 불임1

신·구조문대비표 : 불임2

관계법령발췌서 : 불임3

관련사업계획서 : 해당사항 없음

예산수반사항 : 해당사항 없음

사전예고(결과) : 의견없음

- 입법예고기간 : 2017.1.12. ~ 2017.2.1.(20일간)

기타 참고사항

- 현행조례 : 불임4
- 방침결정문 : 불임5

<붙임1>

안산시 계약심의위원회 구성·운영 및 주민참여감독대상공사 범위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안산시 계약심의위원회 구성·운영 및 주민참여감독대상공사 범위 등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2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9조의 규정에 따른 안산시 계약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과 같은 법 제16조제2항, 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9조, 제60조의 규정에 의한 주민참여감독자의 감독대상공사 범위 등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제1항 및 제2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① 안산시 계약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 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민간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 ③ 위원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06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안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다만, 시의 분임재무관은 당연직 위원으로 한다.

제3조제1항 중 “시장이 지명한 위원”을 “시의 분임재무관”으로 한다.

제4조제1항 및 제2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 ① 위원회는 영 제108조제1항제2호에 따른 규모 이상의 계약에 대하여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32조제1항제1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다만, 긴급한 재해복구사업,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예산을 조기 집행할 필요가 있는 사업은 제외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법 제32조제1항제2호부터 제4호까지에 관한 사항은 계약의 규모와 관계없이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제5조제1항 중 “심의 또는 자문이”를 “심의가”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심사·자문대상안전과”를 “심의를 함에 있어 심의안전과”로, “심의 또는 자문에”를 “심의에”로 한다.

제6조제1항 중 “심의 또는 자문을”을 “심의를”로 하고 “심의 또는 자문 내용”을 “심의 내용”으로 한다.

제7조 제목 외의 부분을 다음과 같이 한다.

위원회(소위원회 포함)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서기 각 1명을 두되, 계약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팀에서 지정한다.

제8조 중 “심의 또는 자문을”을 “심의를”로, “심의 또는 자문요청서”를 “심의요청서”로 한다.

제9조제1항 중 “심의 또는 자문요청서”를 “심의요청서”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심의 또는 자문회의”를 “심의회의”로, “심의 또는 자문기간”을 “심의기간”으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중 “심의 또는 자문”을 “심의”로 한다.

제10조 중 “심의 또는 자문을”을 “심의를”로 한다.

제11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1조(심의사항의 사후관리) 제9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심의결과의 통지를 받은 시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그 심의결과를 반영하여야 한다.

제12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2조(위원의 위촉해제) 시장은 영 제106조의2에 따라 임기만료전이라도 당해 위원을 위촉 해제할 수 있다.

제13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3조(주민참여감독대상공사) 영 제60조제2항에 의한 주민참여감독대상 공사는 추정가격이 3천만원 이상의 공사로 한다.

제14조제1항 단서 중 “계약심의위원회 관련 위원장 및 계약담당자, 관계공무원 이”를 “시 소속 공무원이”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소관 실과		회계과
임 안 자	실·과장 직위·성명	회계과장 김종철
	담당·팀장 직위·성명	계약1계장 박보한
	담당자 성명·전화	윤영빈 (행정 3076)

〈붙임2〉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u>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 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32조제3항 및 동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09조의 규정에 의하여 안산시 계약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구성 및 운영과 법 제16조제2항, 제4항 및 영 제59조, 제60조의 규정에 의한 주민참여감독자의 감독대상 공사 범위 등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u></p>	<p><u>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 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2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9조의 규정에 의하여 안산시 계약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과 같은 법 제16조제2항, 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9조, 제60조의 규정에 의한 주민참여감독자의 감독대상공사 범위 등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u></p>
<p><u>제2조(계약심의위원회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한 1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u></p> <p><u>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경리관이 되며,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u></p>	<p><u>제2조(계약심의위원회 구성) ①안산시 계약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u></p> <p><u>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민간위원 중에서 선출한다.</u></p>
<p><u>1. 「고등교육법」에 의한 대학에서 관련분야의 교수(부교수·조</u></p>	

교수를 포함한다)로 재직 중에 있는 자

2. 변호사의 자격이 있는 자로서 관련분야에 대한 경험과 지식이 풍부한 자

3. 시민단체(「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비영리민간단체를 말한다)가 추천하는 자

4. 「건설기술관리법」에 의한 해당분야 건설기술자 또는 「국가 기술자격법」 등 관련 법령에 의한 해당분야의 기술자격 취득자

5. 관련법령에 의하여 주무관청의 인가를 받아 설립된 관련분야의 협회 등 단체 또는 관련 학회에서 추천하는 자

6. 국가기관 및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공무원으로서 해당분야의 계약·기술 등에 대한 경험과 지식이 있는 자

<신설>

③ 위원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06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안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다만, 시의 분임재무

관은 당연직 위원으로 한다.

제3조(임무 및 임기)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시장이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②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임기 기간으로 한다.

제4조(기능) ① 위원회는 시와 시의 소속행정기관 및 하부행정기관에서 발주하는 추정가격 50억 원이상인 공사(물품, 용역 등)의 경우에는 10억원 이상)의 계약에 있어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개정2008.08.04>

1. 경쟁입찰에 있어서 입찰참가자의 자격제한에 관한 사항
2. 계약체결 방법에 관한 사항
3. 낙찰자 결정방법에 관한 사항
4. 법 제31조의 부정당업자의 입

제3조(임무 및 임기) ① -----

----- 시의 분임재무관 -----
-----.

② (현행과 같음)

제4조(기능) ----- 영 제108
조제1항제2호에 따른 규모 이상의 계약에 대하여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32조 제1항제1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다만, 긴급한 재해복구사업,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예산을 조기 집행할 필요가 있는 사업은 제외한다.

찰참가자격 제한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시장이 심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자문한다.

1. 영 제108조에서 심사대상으로 정한 이외 사업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낙찰자 결정 방법 등에 관한 사항

2. 기타 시장이 전문가의 자문이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부의하는 사항

제5조(회의소집 및 심의) ① 위원 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제4조에서 정한 사항을 심의 또는 자문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이를 소집한다.

② (생략)

③ 위원장은 심사·자문대상안전과 이해관계에 있는 위원을 심의 또는 자문에 참석하게 하여서는 아니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법 제32조 제1항제2호부터 제4호까지에 관한 사항은 계약의 규모와 관계없이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제5조(회의소집 및 심의) ① ---

-----심의가-----
-----.

② (현행과 같음)

③ -----심의를 함에 있어
심의안전과-----
-----심의에-----
-----.

제6조(소위원회) ① 위원회는 제4조에서 정한 사항에 대한 심의 또는 자문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심의 또는 자문 내용에 따라 영 제107조의 규정에 의거 분야별로 소위원회를 구성·운영 할 수 있다.

② ~ ⑥ (생략)

제7조(간사) 위원회(소위원회 포함)에 간사1인을 두되, 계약업무 담당이 된다.

제8조(심의요청 등) 위원회의 심의 또는 자문을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심의 또는 자문요청서에 관계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에게 심의 또는 자문을 요청하여 야 한다.

제9조(심의기간 및 심의결과 통보 등) ① 시장은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심의 또는 자문요청서를 받은 때에는 지체 없이 이를 위원회에 부의하여야 한다.

제6조(소위원회) ① -----

- 심의를 -----

----- 심의 내용 -----

-----.

② ~ ⑥ (현행과 같음)

제7조(간사) 위원회(소위원회 포함)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서기 각 1명을 두되, 계약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팀에서 지정 한다.

제8조(심의요청 등) -----

- 심의를 -----
----- 심의요청서 -----

- 심의를 -----
-----.

제9조(심의기간 및 심의결과 통보 등) ① -----
----- 심의요청서 -----

-----.

② 위원회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의를 받은 경우에는 부의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심의 또는 자문회의를 개최하여야 한다. 다만, 위원장은 부득이한 사정이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당해 심의 또는 자문기간을 7일 이내에 한하여 연장할 수 있다.

②-----

---심의회의

-----.
-----.

③ 위원회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심의 또는 자문한 결과를 시장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③-----

-----.
-----.

제10조(의견청취 등) 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회의 심의 또는 자문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현장조사를 하거나 계약담당자, 관계 공무원을 회의에 출석하게 하여 그 의견을 들을 수 있으며, 관계기관 및 관계 전문가에게 기술검토를 의뢰하거나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제10조(의견청취 등) -----

-----.
-----.

제11조(심의사항의 사후관리) ①
제9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심의결과의 통지를 받은 시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그 심의

제11조(심의사항의 사후관리) 제9
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심의결
과의 통지를 받은 시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그 심의결과를 반

결과를 반영하여야 한다.

영하여야 한다.

② 제9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자문결과의 통지를 받은 시장은 계약관련 의사결정시 이를 참고한다.

제12조(위원의 해촉) 시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임기 만료 전이라도 당해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위원이 장기간 치료를 요하는 질병 또는 6월 이상의 해외여행 등으로 그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울 때

2. 위원 스스로가 해촉을 원할 때

3. 위원이 심의과정에서 공정하지 않은 심의 또는 자문으로 계약사무 수행에 현저한 피해를 끼쳤다고 판단될 때

4. 기타 품위손상 등으로 그 직무 수행에 부적당하다고 인정될 때

제13조(주민참여감독대상공사 및 상한금액) 영 제60조제2항에 의한 주민참여감독대상 공사는 추정

② <삭제>

제12조(위원의 위촉해제) 시장은 영 제106조의2에 따라 임기 만료 전이라도 당해 위원을 위촉 해제할 수 있다.

제13조(주민참여감독대상공사) 영 제60조제2항에 의한 주민참여감독대상 공사는 추정가격이 3천만원 이

가격이 3천만원 이상의 공사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
는 공사로 한다.

상의 공사로 한다.

1. 마을진입로 확·포장공사
2. 배수로 설치공사
3. 간이 상·하수도 설치공사
4. 보안등공사
5. 보도블럭 설치공사
6. 도시계획도로 개설공사
7. 마을회관공사
8. 공중화장실공사
9.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공사

제14조(수당 및 여비 등) ① 위원회의 위원 및 관계전문가와 주민 참여감독자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안에서 별표에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수당·여비 및 심사 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계약심의위원회 관련 위원장 및 계약담당자, 관계공무원이 그 소관업무와 직접적 관련하여 회의에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14조(수당 및 여비 등) -----

시 소속 공무원이 -----

제15조(시행규칙) (생략)

제15조 (현행과 같음)

안산시 계약심의위원회 구성·운영 및 주민참여 감독대상 공사 범위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 안에 대한 수정안

의안 번호	2948
----------	------

제안년월일 : 2017. 4. 12.
제 안 자 : 기획행정위원장

□ 수정이유

- 법제처의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이해하기 쉽게 조사 등을 개정하여 용어사용을 보다 명확히 함.

□ 주요골자

- 조사가 불분명하여 혼선을 줄 수 있는 조문 내용을 보다 명확하게 규정함.(안 제1조 안 제2조제3항, 안 제11조, 안 제13조)

안산시 계약심의위원회 구성 · 운영 및 주민참여 감독대상 공사 범위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에 대한 수정안

**안산시 계약심의위원회 구성·운영 및 주민참여감독대상공사 범위
등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

안 제1조 중 “같은 법 시행령 제109조의 규정에 의하여”를 “ 같은 법 시행령 제109조에 따라”로, “같은 법 시행령 제59조, 제60조의 규정에 의한”을 “같은 법 시행령 제59조, 제60조에 따른”으로 한다.

안 제2조제3항 단서 중 “시”를 “안산시(이하 “시”라 한다)”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및 제3항을 각각 제3항 및 제2항으로 한다.

제11조 중 “제9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를 “제9조제3항에 따라”로 한다.

안 제13조 제목 “(주민참여감독대상공사)”을 “(주민참여감독자의 대상공사)”로 하고, 같은 조 제목외의 부분 중 “영 제60조제2항에 의한”을 “영 제60조제1항에 따른”으로 한다.

수정안 조문대비표

현 행	개정안	수정안
<p><u>제1조(목적) 이 조례는</u> <u>지방 자치단체를 당사</u> <u>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u> <u>법률(이하 "법"이라</u> <u>한다) 제32조제3항 및</u> <u>동법 시행령(이하 "영</u> <u>"이라 한다) 제109조</u> <u>의 규정에 의하여 안산</u> <u>시 계약심의위원회(이</u> <u>하 "위원회"라 한다)</u> <u>의 구성 및 운영과 법</u> <u>제16조제2항, 제4항</u> <u>및 영 제59조, 제60조</u> <u>의 규정에 의한 주민참</u> <u>여감독자의 감독대상</u> <u>공사 범위 등 필요한</u> <u>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u> <u>한다.</u></p> <p><u>제2조(계약심의위원회 구</u> <u>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한 15</u> <u>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u> <u>성한다.</u></p>	<p><u>제1조(목적) 이 조례는</u> <u>「지방 자치단체를 당사</u> <u>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u> <u>법률」 제32조제3항 및</u> <u>같은 법 시행령 제109조</u> <u>의 규정에 의하여 안산시</u> <u>계약심의위원회의 구성</u> <u>및 운영과 같은 법 제16</u> <u>조제2항, 제4항 및 같은</u> <u>법 시행령 제59조, 제6</u> <u>0조의 규정에 의한 주민</u> <u>참여감독자의 감독대상</u> <u>공사 범위 등 필요한 사</u> <u>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u> <u>다.</u></p> <p><u>제2조(계약심의위원회 구</u> <u>성) ① 안산시 계약심의</u> <u>위원회(이하 "위원회"</u> <u>라 한다)는 위원장 1명</u> <u>을 포함한 15명 이내의</u></p>	<p><u>제1조(목적) -----</u> ----- ----- ----- ----- ----- <u>제109</u> <u>조에 따라-----</u> ----- ----- ----- ----- ----- <u>제60조에 따른-----</u> ----- ----- ----- ----- ----- ----- <u>제2조(계약심의위원회 구</u> <u>성) ① (원안과 같음)</u></p>

현행	개정안	수정안
<p>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경리관이 되며,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p>	<p>위원회로 구성한다.</p> <p>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민간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p>	<p>② 위원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06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안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다만, 안산시(이하 “시”라 한다)의 분임재무관은 당연직 위원으로 한다.</p>
<p>1. 「고등교육법」에 의한 대학에서 관련분야의 교수(부교수·조교수를 포함한다)로 재직 중에 있는 자</p>		
<p>2. 변호사의 자격이 있는 자로서 관련분야에 대한 경험과 지식이 풍부한 자</p>		
<p>3. 시민단체(「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 제2조</p>		

현행	개정안	수정안
<p><u>의 규정에 의한 비영 리민간단체를 말한다)</u></p> <p><u>가 추천하는 자</u></p> <p><u>4. 「건설기술관리법」 에 의한 해당분야 건 설기술자 또는 「국가 기술자격법」 등 관련 법령에 의한 해당분야 의 기술자격 취득자</u></p> <p><u>5. 관련법령에 의하여 주무관청의 인가를 받 아 설립된 관련분야의 협회 등 단체 또는 관 련 학회에서 추천하는 자</u></p> <p><u>6. 국가기관 및 다른 지 방자치단체의 공무원 으로서 해당분야의 계 약·기술 등에 대한 경험과 지식이 있는 자</u></p> <p><u><신설></u></p>	<p>③ 위원은 「지방자치단체 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 하 “영”이라 한다) 제 106조제2항 각 호의 어</p>	<p>③ 위원회의 위원장은 민간위 원 중에서 선출한다.</p>

현 행	개정안	수정안
	<p><u>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u></p> <p><u>중에서 특정 성별이 위촉</u></p> <p><u>직 위원 수의 10분의 6</u></p> <p><u>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u></p> <p><u>안산시장(이하 “시장”</u></p> <p><u>이라 한다)이 임명 또는</u></p> <p><u>위촉한다. 다만, 시의 분</u></p> <p><u>임재무관은 당연직 위원</u></p> <p><u>으로 한다.</u></p>	
<p>제3조(임무 및 임기) ①</p> <p>위원장은 위원회를 대 표하고 위원회의 업무 를 총괄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 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u>시장이 지</u> <u>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u> <u>대행한다.</u></p> <p>② 위원장의 임기는 2 년으로 하되,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 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 기간으로 한다.</p>	<p>제3조(임무 및 임기) ①</p> <p>-----</p> <p>-----</p> <p>-----</p> <p>-----</p> <p>-----</p> <p>-----</p> <p><u>시의 분임재무관</u> -----</p> <p>-----</p> <p>----.</p> <p>② (현행과 같음)</p>	<p>제3조 ~ 10조 (원안과 같음)</p>

현행	개정안	수정안
<p><u>제4조(기능) ① 위원회</u> <u>는 시와 시의 소속 행</u> <u>정기관 및 하부행정기</u> <u>관에서 발주하는 추정</u> <u>가격 50억 원 이상인</u> <u>공사(물품, 용역 등)의</u> <u>경우에는 10억 원 이</u> <u>상)의 계약에 있어서</u> <u>다음 각 호의 사항을</u> <u>설의한다.</u> <개정 <u>2008.08.04></u></p> <p><u>1. 경쟁입찰에 있어서</u> <u>입찰참가자의 자격 제</u> <u>한에 관한 사항</u></p> <p><u>2. 계약체결 방법에 관</u> <u>한 사항</u></p> <p><u>3. 낙찰자 결정 방법에</u> <u>관한 사항</u></p> <p><u>4. 법 제31조의 부정당</u> <u>업자의 입찰참가자격</u> <u>제한에 관한 사항</u></p> <p><u>5. 그 밖에 시장이 심의</u> <u>가 필요하다고 인정하</u></p>	<p><u>제4조(기능) -----</u> <u>영 제108조제1항제2호</u> <u>에 따른 규모 이상의 계</u> <u>약에 대하여 「지방자치</u> <u>단체를 당사자로 하는</u> <u>계약에 관한 법률」(이</u> <u>하 “법”이라 한다) 제</u> <p><u>32조 제1항제1호의 사</u> <u>항을 심의한다. 다만,</u> <u>긴급한 재해복구사업,</u> <u>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u> <u>여 예산을 조기 집행할</u> <u>필요가 있는 사업은 제</u> <u>외한다.</u></p> <p><u>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법</u> <u>제32조제1항제2호부터</u> <u>제4호까지에 관한 사항</u></p> </p>	

현 행	개정안	수정안
<p><u>는 사항</u></p> <p><u>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u></p> <p><u>의 사항을 자문한다.</u></p> <p><u>1. 영 제108조에서 심</u></p> <p><u>사대상으로 정한 이외</u></p> <p><u>사업의 입찰참가자격</u></p> <p><u>제한, 낙찰자 결정 방</u></p> <p><u>법 등에관한 사항</u></p> <p><u>2. 기타 시장이 전문가</u></p> <p><u>의 자문이 필요하다고</u></p> <p><u>판단하여 부의하는 사</u></p> <p><u>항</u></p> <p>제5조(회의소집 및 심의) 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제4조에서 정한 사항을 <u>심의</u> 또는 <u>자문이 필요하다</u>고 인정하는 경우에 이를 소집한다.</p> <p>② (생략)</p>	<p><u>은 계약의 규모와 관계</u></p> <p><u>없이 위원회의 심의를</u></p> <p><u>거쳐야 한다.</u></p> <p>제5조(회의소집 및 심의)</p> <p>① -----</p> <p>-----</p> <p>-----</p> <p>----- <u>심의가</u> --</p> <p>-----</p> <p>-----.</p> <p>② (현행과 같음)</p>	

현 행	개정안	수정안
<p>③ 위원장은 <u>심사·자문</u> <u>대상안건과 이해관계</u> <u>에 있는 위원을 심의</u> <u>또는 자문에 참석하게</u> <u>하여서는 아니된다.</u></p>	<p>③ ----- <u>심의를 함에</u> <u>있어</u> <u>심의안건과-----</u> <u>-----심의에-----</u> ----- -----. -----.</p>	
<p>제6조(소위원회) ① 위원회는 제4조에서 정한 사항에 대한 <u>심의</u> 또는 <u>자문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심의 또는 자문 내용에 따라 영 제107조의 규정에 의거 분야별로 소위원회를 구성·운영할 수 있다.</u></p> <p>② ~ ⑥ (생략)</p> <p>제7조(간사) 위원회(소위원회 포함)에 간사 1인을 두되, 계약업무 담당이 된다.</p>	<p>제6조(소위원회) ① ----- ----- ----- <u>심</u> <u>의를-----</u> ----- ----- -- <u>심의 내용-----</u> ----- ----- ----- -----. -----.</p> <p>② ~⑥ (현행과 같음)</p> <p>제7조(간사) 위원회(소위원회 포함)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서기 각 1명을 두되, 계약관</p>	

현 행	개정안	수정안
	<u>현 업무를 담당하는 팀</u> <u>에서 지정한다.</u>	
제8조(심의요청 등) 위 원회의 심의 또는 자문을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심의 또는 자문요청서에 관계 서류를 첨부하여 시 장에게 심의 또는 자문을 요청하여야 한다.	제8조(심의요청 등) ----- <u>심의를</u> ----- ----- <u>심의요청서</u> ----- ----- <u>심의를</u> - ----- --.	
제9조(심의기간 및 심 의결과 통보 등) ① 시장은 제8조의 규정 에 의하여 심의 또는 자문요청서를 받은 때에는 자체 없이 이 를 위원회에 부의하 여야 한다.	제9조(심의기간 및 심의 결과 통보 등) ① --- ----- ----- <u>심의요청서</u> - ----- ----- --. ② ----- ----- ----- ----- ----- ----- ----- <u>심의회의</u> -	
② 위원회는 제1항의 규 정에 의하여 부의를 받은 경우에는 부의 받은 날부터 15일		

현 행	개정안	수정안
<p>이내에 <u>심의 또는</u> <u>자문회의를 개최하</u> <u>여야 한다.</u> 다만, 위 원장은 부득이한 사 정이 있다고 인정하 는 경우에는 당해 <u>심의 또는 자문기간</u> <u>을 7일 이내에 한하</u> <u>여 연장할 수 있다.</u></p> <p>③ 위원회는 제2항의 규 정에 의한 <u>심의 또</u> <u>는 자문한 결과를</u> <u>시장에게 통지하여</u> <u>야 한다.</u></p>	<p>----- ----- ----- ----- ----- ----- <u>심의기간</u> ----- -----. ③ ----- ----- <u>심의</u> ----- ----- ---.</p>	
<p>제10조(의견청취 등) 위 원회의 위원장은 위 <u>원회의 심의 또는 자</u> <u>문을 위하여 필요하</u> <u>다고 인정하는 때에</u> <u>는 현장조사를 하거</u> <u>나 계약담당자, 관계</u> <u>공무원을 회의에 출</u> <u>석하게 하여 그 의견</u> <u>을 들을 수 있으며,</u></p>	<p>제10조(의견청취 등) ----- ----- ----- <u>심의를</u> ----- -----</p>	

현 행	개정안	수정안
<p>관계기관 및 관계 전문가에게 기술검토를 의뢰하거나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 할 수 있다.</p> <p><u>제11조(심의사항의 사후 관리) ①</u> <u>제9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u> <u>심의결과의 통지를 받은 시장은</u> <u>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그 심의결과를 반영하여야 한다.</u></p> <p><u>② 제9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자문결과의 통지를 받은 시장은 계약관련 의사결정시 이를 참고한다.</u></p> <p><u>제12조(위원의 해촉) 시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u></p>	<p>-----</p> <p>-----</p> <p>-----</p> <p>-----</p> <p>-----.</p> <p><u>제11조(심의사항의 사후 관리) 제9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심의결과의 통지를 받은 시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그 심의결과를 반영하여야 한다.</u></p> <p><u>② <삭제></u></p> <p><u>제12조(위원의 위촉해제) 시장은 영 제106조의 2에 따라 임기 만료 전이라도 당해 위원을 위촉 해제할</u></p>	<p><u>제11조(심의사항의 사후관리) 제9조제3항에 따라-----</u></p> <p>-----</p> <p>-----</p> <p>-----</p> <p>-----</p> <p>-----</p> <p><u>제12조 <원안과 같음></u></p>

현행	개정안	수정안
<u>당하는 때에는 임기</u> <u>만료 전이라도 당해</u> <u>위원을 해촉할 수 있</u> <u>다.</u>	<u>수 있다.</u>	
<u>1. 위원이 장기간 치료</u> <u>를 요하는 질병 또는</u> <u>6월 이상의 해외여행</u> <u>등으로 그 직무를 수</u> <u>행하기 어려울 때</u>		
<u>2. 위원 스스로가 해촉</u> <u>을 원할 때</u>		
<u>3. 위원이 심의과정에서</u> <u>공정하지 않은 심의</u> <u>또는 자문으로 계약사</u> <u>무 수행에 현저한 피</u> <u>해를 끼쳤다고 판단될</u> <u>때</u>		
<u>4. 기타 품위손상 등으</u> <u>로 그 직무수행에 부</u> <u>적당하다고 인정될 때</u>		
<u>제13조(주민참여감독대</u>	<u>제13조(주민참여감독대상</u>	<u>제13조(주민참여감독자의 대</u>

현행	개정안	수정안
<p><u>상공사 및 상한금액)</u> <u>영 제60조제2항에 의</u> <u>한 주민참여감독대상</u> <u>공사는 추정가격이 3</u> <u>천만원 이상의 공사로</u> <u>서 다음 각 호의 어느</u> <u>하나에 해당하는 공사</u> <u>로 한다.</u></p> <p><u>1. 마을진입로 확·포장</u> <u>공사</u></p> <p><u>2. 배수로 설치공사</u></p> <p><u>3. 간이 상·하수도 설</u> <u>치공사</u></p> <p><u>4. 보안등공사</u></p> <p><u>5. 보도블럭 설치공사</u></p> <p><u>6. 도시계획도로 개설공</u> <u>사</u></p> <p><u>7. 마을회관공사</u></p> <p><u>8. 공중화장실공사</u></p> <p><u>9. 그 밖에 시장이 필요</u> <u>하다고 판단하는 공사</u></p>	<p>공사) 영 제60조제2항에 의한 주민참여감독대상 공사는 추정가격이 3천만 원 이상의 공사로 한다.</p>	<p>상공사) 영 제60조제1항에 따른 -----</p>
<p>제14조(수당 및 여비 등) 등) ① 위원회의 위원 및 관계전문가와 주민</p>	<p>제14조(수당 및 여비 등)</p>	<p>제14조(수당 및 여비 등) --</p>

현행	개정안	수정안
<p>참여감독자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안에서 별표에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수당·여비 및 심사 수당 등을 지급 할 수 있다. 다만, <u>계약심의위원회 관련 위원장 및 계약담당자, 관계공무원이 그 소관 업무와 직접적 관련하여 회의에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u></p>	<p>-----</p> <p>-----</p> <p>-----</p> <p>-----</p> <p>-----</p> <p>-----시 소속 공무원이 -----</p> <p>이 -----</p> <p>-----</p> <p>-----</p> <p>-----</p> <p>-----</p> <p>-----.</p>	<p>-----</p>
제15조(시행규칙)(생략)	제15조 (현행과 같음)	제15조 (현행과 같음)